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p>시설공사 정산 업무 소홀</p>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항, 제17조(검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결과 계약이행내용이 당초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은 2023회계연도 ① ‘○○중학교 교실천장 교체 전기공사(계약금액: 100,126,850원, 계약일: 2023. 6. 13., 준공일: 2023. 8. 20., 계약상대자: 합자회사○○ 대표 ○○○)’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시행하면서 천장 내 노출 시공 계획한 전선관 일부를 기존 매립 전선관을 재사용하였음에도 미시공한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및 ‘아웃렛박스’를 설계변경·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② ‘○○초 외 1교(○○교) 화장실 보수 및 ○○</p>	<p>○ 신분상처분 - <주의> 1명</p> <p>○ 행정상 처분 - <시정> 1명 - <통보> 1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초 바닥교체 전기공사(계약금액: 56,257,000원, 계약일: 2023. 6. 29., 준공일: 2023. 9. 20., 계약상대자: (주)○○ 대표 ○○○)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시행하면서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일부를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으로 변경 시공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총 7,056,940원을 많이 지출하는 등 [붙임] 과 같이 총 2건의 시설공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처 분 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복무처리(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한경대학교 ○○○는 2023. 5. 10., 5. 11., 9. 5. 진단서 제출병가를 신청하면서 유효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3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1명 ○ 행정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1명

처 분 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p>복무처리(유연근무)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23년도 한경국립대학교 단체협약」에 따르면 본 교 무기계약직원은 복무관리 등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한경국립대학교 직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V.유형별 세부운영지침에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국립대학교 ○○○은 2023.7.31. 08:30부터 18:30까지 유연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등록을 본인 IP 주소가 아닌 다른 직원 컴퓨터 IP 주소로 출·퇴근 등록하는 등“유연근무 출·퇴근 등록 현황”과 같이 총 3명, 합계 7건의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한경국립대학교 ○○○은 2024.6.10. 07:50부터 16:50까지 유연근무를 하면서 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등 【붙임】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 현황”과 같이 총 2명, 합계 3건의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2명 - <주의> 3명 ○ 행정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2명

처 분 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p>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Ⅲ-2-가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식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2024 학년도 한경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출장 시간이 식사 시간에 포함될 경우(조식은 08:00~09:00 / 석식은 18:00~19:00)만 식비 1회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 또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표 1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에 따르면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 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일비는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은 전액을 지급하고 기타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국립대학교 ○○○는 “제2회 경기도의회 의장배 소프트테니스대회 참가” 목적으로 국내출장 (2024.10.26.~10.27., 2일간, 관내 4시간 이상)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붙임】 “출장여비(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 조치 - <통보> 3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출장일 중 1일에 대한 일비 중 2분의 1 감액 없이 전액(2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국립대학교 ○○○은“대학 전산망 ICT 교육과정” 목적으로 강원도 춘천에 교육출장(2024.10.16.~10.18., 2박 3일간)을 갔으나 등록일 및 수료일 외에 기타 일에도 일비 2분의 1액(12,5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붙임】 “출장여비(일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총 4명에 대해 합계 5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는 “2024 대학스포츠 심포지엄 및 직무교육 참석” 목적으로 2024.12.4. 1일간 국내출장(관외, 출장 시간: 09:00~20:00)을 하였으나 식비 공제(2회) 없이 전액(25,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출장여비(식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총 6명에 대해 합계 133,2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	<p>계약서류 미첨부(수의계약 각서)에 관한 사항</p> <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과의 수의계약 적용여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붙임】 “수의계약 각서 미첨부 현황”과 같이 계약 3건에 대해 “수의계약 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p> <p>- <기관주의></p>

처 분 서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6	<p>계약 건 대금 지연 지급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붙임】 “대금 지연 지급 현황”과 같이 대금 지급을 3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 처분 - <기관주의>